

1. 개정 이유

-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조사요원별 자격기준과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음
 - 현재 매장유산 조사기관은 총 172개로 지질유산 조사에 특화된 기관 부재
- 이에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 관련,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조사요원별 자격기준과 조사기관 등록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질유산 발굴조사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및 조사기관 등록기준 마련 (안 제14조제8항)
 - 지질유산 발굴조사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과 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고시함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법률안
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굴조사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과 조사기관 등록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 기준 등) ① ~ ⑦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(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 기준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발굴 조사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과 조사기관 등록기준은 국가유산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.</u>